

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6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4

제 출 자 : 파주시장

□ 제안이유

지방공사·공단의 설립권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되는등 지방공기업법(법률 제5708호 1999. 1. 29)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을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공단의 정관변경시 절차 및 인가권자를 변경함 (안 제5조)
 -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던 것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
- 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(안 제7조)
 - 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던 것을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
 -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의 임면하던 것을 시장이 임면토록 함
-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 (안 제8조)
-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(안 제9조)
- 공단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대표권을 제한할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 (안 제13조)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

파주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여 파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)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자본금) ①공단의 자본금(이하 “자본금”이라 한다)은 5억원 이내로 하고 파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출자한다.

②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,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

③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5조(정관)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본금에 관한 사항
5. 사업에 관한 사항
6. 임·직원에 관한 사항
7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9.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

10. 공고에 관한 사항

1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설립등기)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제2장 임원 및 직원

제7조(임원) ①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공단의 이사장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.

③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.

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정관에서 규정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이사장추천위원회) ①이사장추천위원회 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 의회와 시장 및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자 각 2인과 공단의 감사로 구성하되,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하고, 추천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② 당해 공단의 임·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추천위원회는 시장에게 이사장후보를 복수로 추천한다.

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임원의 임기) ①이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
2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5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제11조(임·직원의 겸업금지)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,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제12조(비밀누설 금지등)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3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.

제14조(이사회)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5조(이사회의 참여제한)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6조(직원의 임·면)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·면한다.

제3장 사 업

제17조(사업) ①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
2.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
3. 제1호의 부대사업
4.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
5.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
6.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

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.

제18조 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9조(경영평가)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4장 재무회계

제20조(사업년도) 공단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21조(사업계획 및 예산)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의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.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22조(결산)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1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3조(계리의 원칙)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하여야 하며,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

제24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대부(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
제5장 감 독

제25조(감독) ①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.

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2. 인사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6조(보고 및 검사등) 시장은 공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제6장 보 칙

제27조(기타법령등준용) 공단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.

제28조(권한의 위탁)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29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30조(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) 파견된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.

제31조(공인의 비치)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.

제3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사설립경비)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.